



# 2016년도 세입·세출예산(안) 편성계획

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자원 배분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여, 민선6기 『마음이 모여 마을이 되는 마을민주주의 성북』 구현에 재정적 역량을 집중코자 함

## I 2016년 재정운용 여건

### □ 세입여건

- (지방세) 공시지가 인상, 감면 축소 등으로 소폭 증가 예상
- (세외수입) 증가요인이 뚜렷하지 않고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전년수준 유지 전망
- (시·군 조정교부금) 서울시 조정교부금 자원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금 교부액 증가 전망
- (국·시비보조금)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시행으로 지속 증가 예상

### □ 세출여건

-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 법정·의무적 및 경직성 경비 지속 증가 예상
- 민선6기 역점사업·공약사업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추가 자원 소요
-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국·시비 보조사업 매칭비 분담금 지속 증가
-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에 따른 복지 분야 예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분야 예산 소요 증가

## □ 재정여건 총괄

- 2016년 세입은 소폭 증가 예상되나, 세출소요는 여러 분야에 걸쳐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므로
- 세출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, 사업의 우선순위에 입각,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자원배분 필요

## Ⅱ 2016년 재정운용 방향

- 인건비 등 법정·의무적 경비 우선 반영하되, 긴축 예산편성 기조 유지
- 민선6기 효율적 구정 운영 수행을 위해 주요 역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선택적·효율적 자원 배분
- 성과중심의 재정 운용 강화 →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등
- 기존사업은 타당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, 신규사업은 기획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 반영

### 세 입

- 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 노력
- ② 불요불급한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원 마련
  - 공유재산에 대한 활용도 검토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재산 매각
- ③ 신규세원 발굴로 세입 증대
  - 은닉 공유재산 적극 발굴 및 무상임대·유휴재산의 활용방안 강구
  - 공공시설 유휴공간 대관료 수수료 징수 등 세입원 적극 발굴
- ④ 국가정책사업 보조율 상향 지원 및 기준보조율 차등지원 등 개선사항 지속 시정요구

## 세 출

- ① 예산편성과정에서 전 사업을 Zero-Base에서 재검토
- ② 기존사업에 대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추진
  - ⇒ 안전, 복지 등 지출 수요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수요 최대한 흡수
  - 자체점검을 실시, 중복·유사·사업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축소·통합·폐지하고, 적은 예산으로도 동일 효과 달성이 가능하도록 사업 재설계
  - 사업효과 없이 연례적·반복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은 과감히 세출 조정, 사업 초기단계부터 낭비요인 적극적 제거
  - 반복적 불용, 사고이월 발생 등 집행부진 사업은 연도내 실행가능액만 계상하여 재원의 효율적 운영 도모
- ③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한 관리강화
  -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지원 예산 편성 불가
  - 2016년부터는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지급
- ④ 공약사업 및 계속사업 중 2016년 마무리사업은 우선 반영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지양, 시설 유지 등 안전과 직결되는 투자는 지속 추진

## Ⅲ 2016년 주요 달라지는 내용

- 『지방재정법』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반영
  -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의무화
  -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사고이월 시기 조정
  - 예산의 첨부서류 변경사항 적용

『세입예산 과목구분 및 설정』 개선

- 기타수입에 ‘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’ 편성 근거 신설

『세출예산 사업별 분류』 개선

- 법령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자·출연토록 규정

※ 출자·출연을 하려면 사전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.

『세출예산 성질별 분류』 개선

- 무기계약직, 기간제근로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건비 편성기준 제시
- 기타 예산편성 과목 설정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반영

## IV 2016년 예산안 세부편성지침

### 1. 세입예산 요구

#### 세입예산 편성 관련 유의사항

-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하여 세입에 반영
-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없이 예산편성
- 최근 3년간 세입징수 실적을 토대로 증·감 현황, 관련 제도 변경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반영
- 요구예산의 산출근거 및 추계내역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제시

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 및 요구, 재정보전금 : 세무1과

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 : 기획예산과

순세계잉여금 추계 및 요구 : 재무과

※ 부서별 집행잔액, 통장 잔고(세입내역) 확인 등 사전 가결산 후 요구

국·시비 보조금 : 해당 부서

※ 가내시 통보액을 기준으로 하되,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면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적정 예산 요구

## 2. 세출예산 요구

### 세출예산 편성 관련 유의사항

- 전례답습식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최근 3년간 산출내역별 집행실적을 면밀히 분석, 집행 가능한 실제 예산만 요구 ※ 타당하고 명확한 산출근거 제시
- 낭비요인 제거 등 예산편성 단계부터 자발적인 절감 노력 강구  
⇒ 모든 사업을 Zero-Base에서 재검토, 자체적으로 세출 구조조정 추진
-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법정경비,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정한 기준경비, 자체적으로 정한 단가 등 준수

### □ 사업예산(정책사업)

- 편성대상 : 주요투자대상사업, 생성·소멸이 있는 소규모사업, 국·시비 보조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성 경비

### ○ 편성방법

- 사업별 효과와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우선순위와 사업규모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요구(투자사업 우선순위 목록 제출)

- 1순위 : 법정경비, 국·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분
- 2순위 : 공약사업 및 계속사업, 2016년 마무리 사업
- 3순위 : 신규사업 중 중점지원 분야

- 중기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은 예산반영 불가
- 부서별 '16년 업무계획과 연계하여 방침 결재 후 예산편성 요구
- 3억원이상 기존 및 신규 투자사업은 사업설명서 별도 제출
- 보조금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여 편성
- 시책추진업무추진비, 소모성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규모 이하 요구 원칙

### □ 재무활동

- 편성대상 :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비용
- 편성방법 : 특별한 증액요인이 없는 한 비목별로 2015년도 수준 편성 요구

## □ 행정운영경비

- 편성대상 : 인력운영비, 기본경비
- 편성방법
  - 인력운영비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 편성 ※ 기준인건비 총괄부서 : 행정지원과
  - 소요 물량은 원칙적으로 2014년도 결산액을 참고하여 2015년도 결산 예상액 기준범위로 한정
  -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수 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만 편성

## 3. 성과계획서 작성

- 국·소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 및 예산 운영의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통합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
- 1년 동안 추진해야 할 목표와 주요사업을 예산과 연계시켜 체계화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경영 측면이 강조된 성과관리 추진
  - 전략목표 설정 : 국별 1개 정도
  - 정책사업 목표설정 : 1개의 정책사업 목표는 예산체계상 정책사업 1개와 대응
  - 단위사업 설정 : 예산체계의 단위사업과 일치
  - 성과지표 설정 : 측정가능(정량지표)하고, 결과중심적인 지표 설정,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 설정

※ 「지방재정법」 제5조 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예산의 '성과계획서' 작성이 의무화되고, 2016회계연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

## V 행정사항

---

### 1. 예산편성 추진일정

- 예산편성 지침 통보

2015. 9. 7 한

- 사업부서 예산요구서 작성 제출
  - 사업구조화 및 세입·세출예산 전산입력 2015. 9.21 한
  - 성인지예산서 및 성과계획서 작성 2015. 9.30 한
  -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 2015.10.15 한
- 예산안 조정 2015.10.31 한
- 예산(안) 보고 및 확정 2015.11.12 한
- 구의회 사전설명 2015.11.17 한
- 예산(안) 구의회 제출 2015.11.21 한
  - ※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 제출
- 예산(안) 구의회 의결 2015.12.21 한
  - ※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

## 2. 예산편성요구 제출자료

구 분	제 출 내 용
세입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출기한 : <u>2015. 9.21</u></li> <li>○ 2016년 세입예산 요구서(서식1호) - 전산출력물 제출</li> <li>- 세입예산 사업설명서(서식2호) - 워드작성 제출</li> </ul>
세출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출기한 : <u>2015. 9.21</u></li> <li>○ 2016년 세출예산 요구서(서식3호) - 전산출력물 제출</li> <li>○ 세부사업설명서(서식4호) - 전산출력물 제출</li> <li>○ 3억원이상 투자사업 별도 설명서 제출(서식5호)-워드작성</li> <li>○ 정책사업 우선순위 목록 - 워드작성</li> </ul>
기타 제출자료 (예산안 첨부서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출기한 : <u>2015.10.15</u></li> <li>○ 마을담당관 - 주민참여 의견서</li> <li>○ 감사담당관 -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</li> <li>○ 생활보장과, 교통지도과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당 특별회계 전전년도 결산 총계 및 순계표</li> <li>- 해당 특별회계 전년도 세입·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</li> </ul> </li> </ul>



구 분	제 출 내 용
기타 제출자료 (예산안 첨부서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획예산과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정운용상황개요서</li> <li>-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</li> <li>- 통합재정통계 보고서</li> </ul> </li> <li>○ 재무과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전년도 결산 총계 및 순계표</li> <li>- 전년도 세입·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</li> <li>-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</li> <li>- 공유재산조서</li> </ul> </li> <li>○ 세무1과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방세 지출보고서 및 지방세 지출현황</li> <li>-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</li> </ul> </li> <li>○ 행정지원과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(2015.9.1기준)</li> </ul> </li> </ul>

### 3. 기타 유의사항

- 세입주관부서에서는 세수전망을 총괄 분석 세입예산 요구서 제출
  - 세입 해당부서 → 세무1과(수합검토) → 기획예산과에 제출
  - ※ 세입자료는 2부를 작성하여 세무1과와 기획예산과에 각각 제출
- 국·시비 보조사업은 가내시공문 등에 의한 계획된 재원이 예산에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
- 신규 투자사업, 경상사업은 구청장 방침을 득한 후 계획서를 제출

붙임 2016년 예산편성 세부지침 1부. 끝.